

##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
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「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18.6.5)」에 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6일

보건복지부장관

### 1. 지정 목적

-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(단체)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,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·지원

- ◇ “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사회적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
- ◇ “사회적기업”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

## 2. 지정 요건

### 가.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- 「민법」상 법인·조합
  - 「상법」상 회사·합자조합
 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익법인
 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상 비영리민간단체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사회복지법인
 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
  
-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-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
    -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
    - \* 예)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'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'15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    -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      - 1)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
      - 2)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
      - 3)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
< 대상 사업 분야 : 위 조직형태 요건에 부합하는 다음 사업 >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사업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사업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사업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고령자친화사업,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사업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사업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사업
- 의료서비스, 제약바이오, 의료기기, 뷰티·화장품, 의료기술, 국제의료 등 보건산업 관련 사업
- 위 대상사업 외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

나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(최소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18.4~18.6)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
  - \*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
-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  - \*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
다. 사회적 목적 실현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  -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(활동)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,
 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하고,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
**<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>**

구 분	조직의 주된 목적	판단기준
사회서비스 제공형	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	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 *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바우처 제공기관의 경우 별도 사업별 인정기준에 따름
일자리제공형	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지역사회공헌형	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	①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 거주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 고용비율이나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 ②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 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혼합형	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	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% 이상
기타형	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	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조, 제2조에 따른 '지활기업'

\* 기타 세부사항은 '6. 요건별 세부 인정기준' 참조

**라.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**
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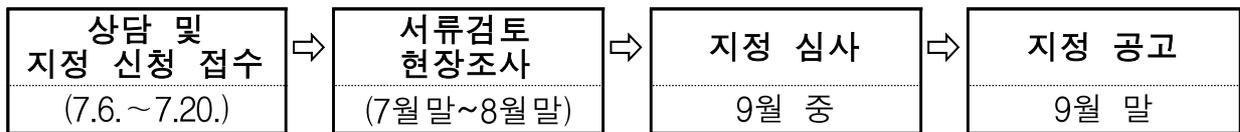
**마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**

### 3.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

#### 가. 지정 절차

-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,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\* 사전 상담 및 컨설팅(권역별 지원기관 및 부처형 전문기관) → 신청·접수 (통합정보시스템) →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(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) → 지정 심사 → 보건복지부장관 지정



\* '서류검토과정'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,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

#### 나. 지정결과 발표 : 2018년 9월 말

-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
#### 다. 지정기간 : 지정서 발급일부터 '3년'

- 지역개발사업(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)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

- 단,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\*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

\* 예: ① 마을기업(교육·컨설팅, 인건비 지원) ② 농어촌공동체(기획·개발·마케팅·홍보비 지원)

### 4. 접수기간 및 방법 등

#### 가. 접수기간 : 2018년 7월 6일(금) ~ 7월 20일(금)

## 나. 접수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 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 접수

- \* 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 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
- \* 2018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(P18 참조)
-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·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 등록
-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
- \*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: 1661-4006

\*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: ①회원가입(일반 및 기업회원) → ② 지정신청 (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)

\*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([www.socialenterprise.or.kr](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)) 참조  
☞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→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

## 다. 문의처

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
  -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(☎02-365-0330)
  -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(☎1800-2012)
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☎031-697-7791~4)

## 5. 제출서류

-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특히, 바우처 제공 실적은 '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'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

## 〈제출서류 목록〉

구분	유형	제출서류 세부사항			
공통서류		1.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【서식1】 2.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【서식2】			
조직형태 관련서류	필수	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	법인으로 보는 단체		
		1. 사업자등록증 2. 법인설립허가증, 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. 기업 소개자료 (선택사항)	1. 사업자등록증 2. 기업 소개자료 (선택사항)		
유급고용 관련서류	필수	1. 유급근로자 명부(취약계층 기재) 【서식3】 (18.4~18.6, 매월) 2. 임금대장/급여명세서 (18.4.~18.6, 매월) 3.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(4대보험 포함)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18.4~18.6, 매월) 5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【서식4】 ※ 자활기업 특화형 신청기업 중에 구성원 외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‘유급 고용 관련서류’ 제출 제외			
영업활동	필수	1. 재무제표(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, 제조원가명세서(제조업)): 재무제표 상 회 계기간 “제0(전기)”는 2017년 12월 31일, “제0(당기)”는 2018년 6월 30일 가결산 ※ 반드시 회계사·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회계자료(재무제 표, 확인원 제출)만 인정하며, 17년도에 개업을 한 경우 회계기간은 수익 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임 2. 총계정원장(“매출장”만 제출): (18.1~18.6): 통합정보시스템 상 업로드 안될 경우, 현장조사 시 제출			
사회적 목적 실현	유형	사회서비스 제공형	일자리 제공형	지역사회 공헌형	혼합형 및 기타형
	공통	1.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【서식5-1~5-6】			
	필수	2.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증빙	2. 취약계층 고 용증빙	2. 취약계층 고용 증빙	2. (혼합) 취약계층 고용증빙  2. (기타)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

구분	유형	제출서류 세부사항
	<p>1)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적 목적 활동내역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, 이에 따라 ‘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’ 작성 및 제출</p> <p>2)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은 18년도 6월까지(최소 3개월 이상)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</p> <p>3) 사회서비스 바우처 실적 제출 관련 세부 안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바우처 제공 실적 제출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월별 이용자 결제내역(엑셀)을 PDF로 전환하여 제출</li> <li>* 시스템 경로: 매출및정산&gt;바우처이용조회&gt;바우처이용내역조회(신규)</li> <li>○ 유형②의 경우, 단가공고 확인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상 ‘기타서류’부분으로 제출</li> <li>○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을 위한 전체 서비스 수혜자 확인서류(바우처 실적 이외)는 통합정보시스템 상 ‘기타서류’ 부분으로 제출하며, 시스템 용량 제한으로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시 제출</li> </ul> </div> <p>※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“주된 목적”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</p>	
<p>사회적 목적 재투자</p>	<p><b>필수</b></p> <p>1. 공증 받은 정관·규약 등</p> <p>※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</p> <p>※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, 이익의 재분배 내용(해산 및 청산시 포함)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</p>	
<p>기타</p>	<p><b>선택</b></p> <p>1. 공공기관, 기업체,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</p> <p>2. 「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」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(해당 기업만 제출)</p> <p><b>필수</b></p> <p>1. 마을기업·지역형·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 기업만 제출)</p> <p>2.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(자활기업 특화형 신청기업에 한함)</p> <p>3.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【서식6】</p> <p><b>필수</b></p> <p>1.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기관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</li> <li>- 과정명 : 사회적기업 기본과정(7시간), 인사/노무, 세무/회계 수강확인증</li> <li>* 홈페이지 참조: <a href="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">www.socialenterprise.or.kr</a></li> </ul> <p>※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 외 지자체, 대학 및 부설기관,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)</li> </ul>	

## 6. 요건별 세부심사기준

### ① 사회적 목적 실현

#### 1) 사회서비스 제공형

- ‘취약계층\*’에게 ‘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’으로 ‘사회서비스를 제공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

\* 취약계층 기준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 2조

-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(연)인원, 제공시간,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
-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\*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

\*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·면단위 지역

- 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실적은 다음 요건을 적용

※ '17년까지 바우처 제공 실적은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사유로 불인정되었으나, '18년부터 사업별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

- 유형①~③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

\* (제외) 일반 의료기관 이용 또는 물건 구매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

- 유형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, 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 등)에게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최소한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전체 실적을 인정

\*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- 유형②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,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아동 등)들에게 돌봄·재활·상담 등의 서비스를 사업별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으나 기관별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

\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발달재활서비스, 언어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

- 유형③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,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, 서비스의 대상 및 단가가 사업·기관·지자체 별로 모두 상이하여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불인정

\*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- 단, 유형①~③과 관계없이 읍면 단위 지역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바우처 실적은 서비스 단가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

**<바우처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해당 사업 및 실적 인정 기준표>**

구분	해당 사업	실적 인정 기준
유형 ① <인정>	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	- 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 등)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체 실적을 인정
유형 ② <부분인정>	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	-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아동 등)들에게 사업별 서비스 기준 단가 이하로 제공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* 서비스 단가: 정부지원(바우처) + 본인부담(본인부담금) * 예) 발달재활서비스 : 월8회(주 2회), 회당 27,500원 기준 이하 서비스 실적('18년 기준)
유형 ③ <불인정>	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	- (원칙)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, 서비스의 대상 및 단가가 사업·기관·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여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불인정 - (예외)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는 하단의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, 일자리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예외 인정	사업 구분 없음	-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*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 *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·면단위 지역

-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(바우처 대상자 등)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,

\* (실적 인정 기준) 총 인원 기준 적용하며, 제공횟수를 중복으로 실적 산정 불가

- 바우처 대상자 중에 월 4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 한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로 인정

\* 신청월 직전 3개월('18.4.~'18.6.) 동안 전체 서비스 수혜자 63명 중에 바우처 수혜자 21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,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33%에 해당

【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류 】
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해당 기관의 월별 이용자 결제내역을 추출·출력하여 제출
  - \* 시스템 경로: 매출 및 정산 > 바우처 이용 조회 > 바우처 이용내역 조회(신규)
- 서비스 대상자\*별로 사업 종류, 바우처 지원금, 본인부담금, 바우처 이용시간 등 확인
  - \* 대상자의 정보 제한: 이름(가운데 이름 글자 \* 표시), 생년월일 이외 개인정보 노출 불가

- 바우처사업 이외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, 별도 실적으로 인정

\* (제외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

## 2) 일자리 제공형

- '일자리 제공형'은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, 취약계층에게 **괜찮은**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

-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임원은 제외

- **괜찮은**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, 주 20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

\* 의무고용비율(30%)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**괜찮은** 일자리 제공

\*\*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(감원, 해고 등)이 없어야 함

## 3) 혼합형

- '혼합형'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
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
## 4) 지역사회 공헌형

- '지역사회 공헌형'은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### ①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하는 유형(가형)

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  -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'일자리제공형'과 '사회서비스제공형'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  -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(20%)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(20%)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

###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(나형)

- 빈곤, 낙후, 소외, 재난,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
  - \*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.
  -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(매입액) 또는 수입(매출액)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% 이상이어야 함
    - \*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

### ③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(다형)

-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
  - \*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함
  -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(매입액) 또는 수입(매출액)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% 이상이어야 함
    - \*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

##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('18.4~'18.6)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
  -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급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해야 함
  - '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'은 적용하지 않으며,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- \*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
-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
  - 고용형태\*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    - \*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, 파트타임 근로자 등 포함
    - \*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  - 최소 1인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인 상태라도 상대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인 이상으로 인정

## ③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
  -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
<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>

- 지역사회 환원
  - 설비재투자·기술개발 또는 사회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
  -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(근로복지 개선/강화)
  -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(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)
  - 공익을 위한 기부 등
- ※ 대표, 임원,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
※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'사회적 목적 재투자'로 볼 수 없음

**4] 종사자의 복리후생 요건(“예비 사회적기업”으로 지정된 기업에 한함)**

-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고용된 서비스 제공인력의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함
- \* 법정 의무교육 시간은 제외함

————— **종사자복리후생(교육) 세부 요건** —————

- (교육대상) 기관에 고용된 서비스 제공인력
- (교육시간) 지정기간 동안(지정후 3년) 1인당 연 10시간 이상
- (교육방법)
  -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
  - 의무시간 1/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 실시
- ※ 교육비용 제공기관 부담
- (교육내용)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 외 소진 예방, 스트레스 관리, 문화, 교양 등
- (증빙자료) 교육 수료증 사본, 교육 확인증 사본, 교육 참석자 명단 등

- 법정 예외자(기초수급자, 의료급여자, 연금수령자, 고령자 등)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5대 사회보험\*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\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

## 7. [자활기업 특화형] 요건별 세부심사기준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, 제32조에 따른 '자활기업'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조직형태,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, ③ 사회적 목적 실현, ④ 관계법령의 준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

◆ 기타 심사 항목들에 있어서는 일반 요건을 준용함

### 1]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, 제32조에 따른 '자활기업'으로,
    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'지원대상 자활기업'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    -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\* 단,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

#### 2018년도 '지원 대상 자활기업' 요건

- \*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/3 이상이어야 함
- \*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
- \*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\*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
- \* 자활근로사업단의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

### 2]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,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

- 단,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'18.4~'18.6)동안 개인사업자였을 경우 개인사업자 영업 실적 및 자활기업 구성원(2인 이상) 실적을 인정
- \* 자활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성과를 모두 입력
- \*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 전환을 요건으로 하며,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,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 간 포괄적 양수양도 행정처리 확인

### ③ 사회적 목적 실현

-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- 단,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### ④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
## 8. 예비사회적기업 지원

### 가.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

- (재정지원) 일자리 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 등 지원
- \* 일자리창출(최저임금 수준 인건비+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), 전문인력 지원(월 200만원~250만원 한도), 사업개발비(연간 5천만원 한도), 컨설팅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최대 330만원 이내) 지원

#### 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

- 바우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 참여 인력은 대상 제외
- 단, 사업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
- \* (예시)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

- (전문성지원)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
- (기 타) 포럼, 제품 전시회, 기업연계, 모태펀드 등

## 나.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시

- 사회보험료 지원(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(4년간)),  
세제지원(사회적기업에 법인세,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 등)

### <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기간 >

구분	일자리창출	전문인력	사업개발비
주요 지원내용	최저임금 수준 인건비+ 사업주 사회보험료 *연차별 지원비율 차등 (1년차 70%, 2년차 60%)	월 200~250만원 한도 (1명) *자부담 10/20%	연 5천만원 한도 *자부담 10/20/30%
약정기간	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		
지원기간	지정기간내 2년		
지원기간 산정방법	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		

## 다. 보건복지부 자체 지원 사항

- 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)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외에 중앙 및 시·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원
  - \*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(노인돌봄종합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재활 등)의 경우 ‘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’에서 기본적으로 컨설팅 제공
- (보건산업 분야\* 기업)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지원
  - \* 제약, 의료기기, 화장품, 정밀의료, 재생의료, 보건 관련 수출·해외진출 등

## 9.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

지역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	이메일
서울	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(충정로 2가, 본관)	02-365-0330	joyfulunion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	070-4763-0130	pns@pns.or.kr
인천	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(충정로 2가, 본관)	02-365-0330	joyfulunion@naver.com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	033-749-3905	gwcs0524@naver.com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(동산동 11-4번지)	053-956-5001	ucsr@hanmail.net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	053-956-5002	se@sebiz.or.kr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	051-517-0266	info@rise.or.kr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, 2층	052-267-6176	ulsan@sescoop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(상남동 토토스빌딩)	055-266-7970	moducoop@naver.com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	062-383-1136	ses@socialcenter.kr
전북	(사)전북사회경제포럼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-11 (엠플러스빌딩 301호)	063-251-3388	masterjse@gmail.com
전남	(사)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	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, 210(상동, 초원오피스텔)	061-282-9588	sstreetree@naver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	064-726-4843	jejusen2015@hanmail.net
대전 세종	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(선화동, 3층)	042-223-9914	c-cmail@hanmail.net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(운천동, 5층)	043-222-9001	cbse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	041-415-2012	cnse1212@gmail.com



**【별지 제2호서식】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(3매 이내 작성)**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			
<b>◆ 기관개요</b>			
기 관 명		대 표 자	
소 재 지			
<b>◆ 요건충족 계획</b>			
인 증 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 ], ㉡[ ], ㉢[ 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형		
조 직 형 태	인증 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		
근 로 자 고 용 계 획	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(정규직 00명 등)		
사 회 적 목 적 실 현			
의 사 결 정 구 조	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,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		
정 관 규 약	정관·규약등 제·개정 계획 -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		
<b>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</b>			
사 업 목 표	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, 사회적 가치 등		
사 업 필 요 성	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, 해결방안 등		
사 회 적 목 적 실 현을 위 한 추 진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세부내용, 사업수단, 마케팅, 및 홍보, 지역사회 연계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		
<b>◆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</b>			
영 업 수 입 확 보 방 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- 위탁계약, 판로개척,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		
영 업 외 수 입 확 보 방 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- 회원명부,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		
지 역 사 회 협 력 방 안			

기	타
◆ 단계별 세부추진계획	
1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업계획수립
2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
3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대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
4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회적기업 인증 신청
◆ 기타 인증 추진계획	
<p>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</p>	



# 【별지 제4호서식】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

(앞쪽)

##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‘대표자’ 직접 작성
-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

1	<p>‘근로기준법’, ‘최저임금법’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· 매월 임금 정기 지급 ·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· 주휴수당(일명 주차수당) 지급 ·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(* 2018년 시간급 7,530원, 월209시간 기준 1,573,770원) ·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</p>	□예 □아니오
2	<p>‘직업안정법’ ‘파견법’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· 4대보험 체납 없음 ·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· 노동청,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·접수된 사항 없음 ·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</p>	□예 □아니오
3	<p>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</p>	□예 □아니오
4	<p>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</p>	□예 □아니오
6	<p>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(지정)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</p>	□예 □아니오
7	<p>최근 2년간(‘17~’18)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</p>	□예 □아니오
8	<p>마을기업, 부처형·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. *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</p>	□예 □아니오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## 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 
(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)



**【별지 제5호의2서식】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(기관용)**

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(기관용)			
제공기관	기관명		연락처
	주 소		
수혜자 (수혜기관)	성명 (기관명)		연락처
	주 소		
사 회 서 비 스 내 용	서비스명		
	제공일시		
	수혜자수		
	수혜대상		
	수혜내용		
	환산금액 (세부내역)		

( )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,  
 ( )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제공기관 :

대 표 : (인)

수혜기관 :

대 표 : (인)









## 【별지 제6호서식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,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핸드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개인정보의 제공: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성명	
주민등록번호	-

▶ **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 2조**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1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▶ **취약계층 요건 여부 확인 서류**

저소득층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수급자증명서,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,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,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 등
장애인	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고령자	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사본) 등
기타	한부모가정 증명서, 탈북자증명서(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),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(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), 장기실업자(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), 결혼이민자(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상 F-2 또는 F-5, F-6), 갱생보호대상자(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),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